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9.29)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29-20 일원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51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9.30~2003.09.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09.29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LH 인천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모바일 및 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 소득, 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10.17~20)		(10.31)		(11.14~18)						('23.03.09)		('23.03.27~29)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5%)	잔금 (95%)							
16	대학생	60	-	30	16.5200	8.6585	2.1146	9.2847	36.5778	**24,480**	1,224	23,256	**102,000**	(+) 4,000	28,480	82,000	6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 / 지역난방	'23.10
														(-) 20,000	4,480	143,660			
	청년(소득無)		30							**24,480**	1,224	23,256	**102,000**	(+) 4,000	28,480	82,000	6		
														(-) 20,000	4,480	143,660			
	청년(소득有)									**25,920**	1,296	24,624	**108,000**	(+) 6,000	31,920	78,000	6		
														(-) 21,000	4,920	151,750			
21	대학생	109	-	54	21.3000	10.7849	2.7265	11.9712	46.7826	**30,940**	1,547	29,393	**128,910**	(+) 10,000	40,940	78,910	6		
														(-) 26,000	4,940	183,070			
	청년(소득無)		55							**30,940**	1,547	29,393	**128,910**	(+) 10,000	40,940	78,910	6		
														(-) 26,000	4,940	183,070			
	청년(소득有)									**32,760**	1,638	31,122	**136,500**	(+) 11,000	43,760	81,500	6		
														(-) 28,000	4,760	194,830			
	주거급여 수급자	31	15	16						**27,300**	1,365	25,935	**113,750**	(+) 7,000	34,300	78,750	20		
														(-) 23,000	4,300	161,660			
26A	대학생	9	-	5	26.9900	13.3642	3.4549	15.1691	58.9782	**38,420**	1,921	36,499	**160,080**	(+) 16,000	54,420	80,080	6		
														(-) 32,000	6,420	226,740			
	청년(소득無)		4							**38,420**	1,921	36,499	**160,080**	(+) 16,000	54,420	80,080	6		
														(-) 32,000	6,420	226,740			
	청년(소득有)									**40,680**	2,034	38,646	**169,500**	(+) 18,000	58,680	79,500	6		
														(-) 34,000	6,680	240,330			
	주거급여 수급자	10	5	5						**33,900**	1,695	32,205	**141,250**	(+) 12,000	45,900	81,250	20		
														(-) 29,000	4,900	201,66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1	6	5						**42,940**	2,147	40,793	**178,910**	(+) 20,000	62,940	78,910	20		
														(-) 36,000	6,940	253,910			
36A	청년(소득有)	30	15	15	36.0300	17.9795	4.6121	20.2499	78.8715	**53,280**	2,664	50,616	**222,000**	(+) 26,000	79,280	92,000	6		
														(-) 45,000	8,280	315,750			
	주거급여 수급자	10	5	5						**44,400**	2,220	42,180	**185,000**	(+) 21,000	65,400	80,000	20		
														(-) 38,000	6,400	264,16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30	15	15						**56,240**	2,812	53,428	**234,330**	(+) 28,000	84,240	94,330	20		
														(-) 48,000	8,240	334,330			
44	고령자 (주거약자外)	10	5	5	44.3300	22.2597	5.6746	24.9147	97.1790	**68,020**	3,401	64,619	**283,410**	(+) 34,000	102,020	113,410	20		
														(-) 58,000	10,020	404,24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99	100	99						**71,600**	3,580	68,020	**298,330**	(+) 35,000	106,600	123,330	6~10		
														(-) 59,000	12,600	421,240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21형·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형,26A형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26B, 36B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21형의 주택에는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2.09.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44㎡형 1세대(103동 108호)은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16,21,26A·B : 2구형 전기쿡탑, 36A·B,44: 3구형 전기쿡탑 설치)**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3.10)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합니다.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구 분	순 서	비 고
일반공급	순위 → 추첨	16, 21, 2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9.30~2003.09.29)**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854,53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관리번호) 2022000699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16형·21형·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인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인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입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신청자 본인이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신청자 본인이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관리번호) 2022000699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우선공급 2순위(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배점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고일(2022.09.29.)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온라인·등기우편접수만 가능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2.10.17(월) 10:00 **~** **'22.10.20(목) 17: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만** 가능 **(현장접수)** **10.18(화)~10.19(수)** **10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22.10.31(월)**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온라인 접수** **'22.11.14(월)** 10:00 **~'22.11.18(금)** 18:00 ■ **등기 우편접수** **'22.11.14(월)** **~'22.11.18(금)** **(등기우편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2.11.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23.03.09(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별도 게시	**'23.03.27(월) 10:00** **~** **'23.03.29(수) 18: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3.03.28(화)** **10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LH 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 **청약접수는**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22.10.20(목)은 17:00 전까지)**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10.31(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온라인(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안내사항을(공고문 6. 신청서류)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인 경우, '22.11.18(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현장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10.18(화) ~ 10.19(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수인분당선 호구포역 2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6.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계층 및 우선/일반 공급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계층 및 우선/일반 공급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접수 마지막일인 '22.10.20(목)은 17:00 마감)**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신청 당일에 한함),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table>
<tr><td>기 간</td><td>10.18(화)~10.19(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td><td rowspan="2">약 도</td><td rowspan="2">
</td></tr>
<tr><td>장 소</td><td>LH 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td></tr>
<tr><td>대중 교통편</td><td colspan="3">(지하철)-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버스)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일반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td></tr>
<tr><td>구 비 서 류</td><td colspan="3">□ 아래 서류와 [공고문 6.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4호),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서식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td></tr>
<tr><td colspan="4">□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착용(미착용 시 입장불가) 및 체온측정(37.5℃ 이상일 경우 입장불가), 손소독제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td></tr>
</table>

5.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청약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10.31(월)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상단『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비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일반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현장접수자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① 등기우편 서류접수 [제출기한 : ´22.11.14.(월) ~ 18.(금), 11.18.(금) 우편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기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22.11.18.(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②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 [제출기한 : ´22.11.14.(월) 10:00 ~ 18.(금) 18:00]

-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제출 이용 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서식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상세내용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1-2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3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대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서식2. 복학예정 확인서)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대학/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서식3-1. 신청 확인서)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서식3-2.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	-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행정복지센터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지청)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3.09(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3.03.27(월) 10:00 ~ 03.29(수)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기간 : 22.03.28(화) 10:00 ~ 16:00 /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지방세정 자료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td></tr>
</table>

<table>
<tr><td></td><td>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만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td></tr>
<tr><td>입주안내</td><td>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임시열쇠불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는 임시열쇠불출이 불가합니다.
</td></tr>
</table>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 여건** •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가정동, 연희동 일원으로 인천가정2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임대주택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입주 후 인천가정2 공공주택사업지구내 조성공사 및 주변단지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생활여건시설 미비, 교통시설 부족,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인접 기착공 및 미착공 현장으로 인해 건설장비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인천광역시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천가정2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심곡천 등이 위치하며, 인천가정2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단지주변 외부 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km 이내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청라IC 및 남청라IC,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합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중인 신설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향후 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관청(인천광역시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여건

[개요]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9~19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이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됩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80대(근린생활시설 내 지상주차대수 3대 포함), 지하 312대로 총 392대입니다.
- 101동, 105동은 필로티 세대 없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층의 일부세대 필로티 시공됩니다.
- 단지 출입구에는 주차관제설비(차량출입통제)가 설치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새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에 의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대, 이동형 충전장치용 콘센트가 15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통로부분에 한하여 높이는 2.7m입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101동, 105동 지하1층, 102동, 103동, 104동 1층에 설치됩니다.(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요시설에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목적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명칭은 인접도로 사용조건과 특별한 인과성이 없으며, 단지외 도로현황 및 시설계획은 본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 상가용 지상변압기함은 상가인근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며 주거용 지상특고압스위치함은 단지내 보행자출입구 인근 남서쪽 경계부 조경공간에 설치되며 위치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옥탑층에 지상파(UHD디지털) 안테나 및 무궁화5호,6호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102동, 103동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공공주택성능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이 본 인증 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공고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가스공급은 근린생활시설(상가) 5개소만 공급되며, 세대 및 그 외 부대시설에는 공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각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부대시설 파라펫 및 옥상난간 등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동력 및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103동 옥상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전파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붕층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모듈의 빛산란에 따라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태양광모듈 및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 부대시설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놀이터 및 주민편의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휴게데크 인접세대에서는 휴게공간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추후 입점되는 상가의 종류에 따라 음식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부대시설 등의 지붕(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대는 방범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부대시설 냉난방 실외기 설치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5동 데크층에 부대시설 실외기가 설치되므로 직상·하부세대는 소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점유 금지]**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도·조경공간·휴게데크·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1층 부대시설 등의 지붕(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대는 해당 지붕(옥상)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획여건에 따른 변경 등]**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외관디자인(색채, 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체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과 폭은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재질, 색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여건차이]**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 상 102동 1,2호라인 및 104동 1,2호라인은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지상부 주차장계획 및 주차램프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면변화에 따라 층간소음 및 단열 등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는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의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되며, 동별 승강기의 규격(인승, 속도)은 각 동 층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공통 유의사항]**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지하저수조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지하주차창 및 지하 엘리베이터 홀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 혐오시설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동측, 남측)은 향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나, 별도의 에어컨 설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승강기 내부의 공기유입은 에어컨 설비가 아닌 공기청정기 및 환기휀에 의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 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될 수 있고, 저층세대 시야차폐 및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 동 출입구 인근에 배치된 주차계획(장애인 주차, 전기차 주차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동별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 및 팜플렛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열교환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휀룸, 제연휀룸, 집수정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등)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등 구조물로 인하여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의 경우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여건

[개요]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주방가구 씽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 주방 전기쿡탑 설치대 상부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16,21,26A·B : 2구형 전기쿡탑,

	36A·B,44: 3구형 전기쿡탑 설치) **[발코니]**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우·배수용 드레인 및 입상관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내 설치된 세탁실은 별도의 구획된 출입문이 없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일부세대 간 벽체가 경량칸막이로 시공되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대에는 국기계양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타입별·세대별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쉽게 파괴되는 구조의 칸막이벽이 설치되어 화재시 대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6형 세대 발코니에는 세탁기 설치가 불가하며, 주방 전기쿡탑 아래 공간에 세탁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설치 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실측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설치품목]**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세대내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거실과 실외기실 사이 벽체에 에어컨배관구가 상·하 2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각 세대 내 현관에는 전기통신 통합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44형 타입 복도측 침실 창문 및 전동 1층 외부창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되나, 이외 별도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6형 실외기실 상·하부에 에어컨 배관구가 설치되며, 해당 타입은 빌트인 책상과의 간섭으로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기타 공통사항]**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보강은 없으므로, 제품에 따라 벽걸이 TV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건조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일부세대 경계부위에는 일정한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자재로 시공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과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안내드립니다. • 입주예정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사전방문행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내 세탁기 장소가 협소하여 사이즈가 큰 규격의 세탁기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 전 사전방문행사 시 정확한 치수 및 세탁기 반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사양은 주택형 및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시설(장비,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인 관리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벽걸이TV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 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3) 환경관련등급(계산)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A-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태평양개발(주)[220-81-25657] ㈜영동건설[122-81-28291] ㈜선진건설[128-81-58487] ㈜송현엔지니어링[128-81-74148] 창희파워㈜[176-88-01833] 소성정보기술㈜[201-86-03701] 세원전설㈜[105-81-30768] ㈜동우기전[262-86-00067] 고운시티아이㈜[409-81-28354] ㈜에이텍[133-81-30540]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바탕건축사사무소 ㈜신원기술단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	-
주방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욕실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거주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신청서(서식5)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23.03.27(월)~29(수)) 현장계약 체결 또는 증빙서류·신청서 등기우편 송부
(※ 우체국 소인이 23.03.29(수)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2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